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2026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211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202648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션

담당변호사 김영수, 김성훈

변론종결 2022. 3. 11.

판결선고 2022. 4. 15.

주문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5. 26. 접수 제260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0. 5. 26. 접수 제104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및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래 나.항의 각 신용보증약정 당사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원사)공급거래를 해 온 법인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B은 2016. 5.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24,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D)과, 보증금액 30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E)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B의 대표이사 F는 위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최초 보증기간은 각 2016. 5. 12.부터 2017. 5.

11.까지였다가, 이후 각 2021. 5. 7.까지로 최종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한 법적절차비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B은 피고와 2002년경부터 물품(원사)공급거래를 지속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6.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1, 2, 4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이후 B의 물품대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2017년경에는 B이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액수가 12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추가 물품공급을 중단한 채 B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19. 7.경에는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가 약 5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3) B은 위 약 5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20. 5.경 피고에게 추가 물품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항에서 본 기존 근저당권과는 별개인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5. 26. 피고와의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4)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한편 C은 2020. 9. 10. 원고에게 ‘2020. 9. 9.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B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위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20. 10. 22. C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629,579,173원을 대위변제하고, B 및 B 대표이사 F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30.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621,754,239원 및 그중 619,702,897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4. 2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2336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B과 피고가 2020. 5.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0. 22. C에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기한이 각 2021. 5. 7.까지로 최종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5. 26.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실제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2020. 9.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③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10. 22. C에 B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629,579,173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뒤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곧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나아가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① 원고 또는 B과 또 다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에 대한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해주었다거나, ② 원고 및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20. 9. 1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시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B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1,000만 원의 각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애당초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B는 사업을 계속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갱생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 아닌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 11. 2. 당시 시가는 합계 4,032,962,180원¹⁾ 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5. 26. 당시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위 2020. 5. 2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많아야 위 시가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3,510,000,000원²⁾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소한 522,962,180원(= 4,032,962,180원- 3,5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2020. 5. 26. 당시 4,032,962,18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사업갱생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담보제공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20. 5. 13.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23,500,000원 상당의 생지구매의뢰를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실제로 B에 합계 101,538,360원 상당의 물품(원사)을 공급한 사실, B은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G에 대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합계 879,435,815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B과 피고의 거래관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던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액은 2019. 7.경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많은 5억 5,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B의 물품대금채무액이 여전히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에서 B이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체결된 점, ④ 위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액수를 감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에는 기존 물품대금채무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 B이 G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이 사업을 지속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갱생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피고가 B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B의 물품대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2017년경에는 B이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액수가 12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추가 물품공급을 중단한

채 B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2019. 7.경에도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B이 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추가 물품공급 요청을 하므로 피고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3) 로 주장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성환, 판사 나혜선, 판사 김은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구미시 공장용지 5323.6㎡2. 경상북도 구미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 공해공장

1층 3494.77㎡

2층 1736.8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휴게실

보일러실, 식당, 기숙사 지하휴게실, 보일러실

1층 식당, 기숙사 245.16㎡

2층 기숙사 288.36㎡

3층 기숙사 288.36㎡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수위실 34.50㎡

3.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칠곡군 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380㎡

4. 경상북도 칠곡군 공장용지 1291.6㎡ -이상-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내부 공장기계 전체 시가평가액 4,666,114,180원 중 공장기계 가액 633,152,000원을 제외한 금액

2) 별지 목록 1, 2,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3,510,000,000원이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210,000,000원이다.

3) 피고의 2021. 9. 30.자 준비서면 4/8면 이하 참조